

## I.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장○○는 최○○의 조카로서, 2015. 7.경 동계스포츠 영재 발굴 및 지도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최○○은 정부지원금이나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후원금을 집중 지원받아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친분이 있는 조카인 피고인 장○○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영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장○○은 2015. 2. 경 최○○을 통해 김○을 소개받았고 김○으로부터 법인 설립절차 등의 도움을 받아 2015. 7.경 영재센터를 설립하였다.

#### 가.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 (1) 2015. 10. 2.경 5억 5,000만원 후원

최○○은 2015. 7.~8.경 김○ 등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아봐 달라'는 뜻을 전하였고, 김○으로부터 '빙상연맹을 맡고 있는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 장○○에게 승마 종목과 관련 사업예산서를 건네주며 '승마 종목 사업계획서를 동계스포츠 종목으로 바꿔라, 삼성에 갈 것이니 똑바로 잘 만들어라'라고 말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장○○는 김○ 등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재센터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최○○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최○○에게 건네주었다.

최○○은 2015. 8.경 김○으로부터 '내가 설득하여 삼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영재센터에 후원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였다가 삼성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김○은 2015. 8. 18.경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이○○으로부터 영재센터의 사업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고, 2015. 8. 20.경 주식회사 제일기획(이하 '제일기획'이라고 한다) 스포츠사업총괄사장인 김○○을 만나 'BH 관심사다, 이○○이 어린이 빙상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요구하였다.

김○○은 삼성그룹 내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회장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체육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언급한 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삼성그룹이 추

진중인 각종 사업이나 본인의 체육 관련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김○○은 곧바로 이○○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인 2015. 8. 21.에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이○○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장○○은 '김○○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제안서를 가지고 가 설명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김○○은 2015. 8. 21.경 이○○을 만나 영재센터에서 준비한 후원금 제안서를 건네받았고, 이를 제일기획 스포츠전략기획본부장인 이△△에게 건네주어 후원금 지급을 검토하게 하였다.

피고인 장○○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조속히 후원금을 지급받고자, 2015. 9.경 영재센터 회장인 박○○에게 '삼성그룹에서 후원을 받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 김○○ 사장과 이△△ 상무를 만나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박○○은 그 무렵 김○○과 이△△을 만나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김○○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다.

2015. 9. 하순경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하자, 김○○은 김○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2015. 10. 2.경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2016. 3. 3.경 10억 7,800만원 후원

영재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5억 5,000만원을 후원받은 직후, 최○○은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더 지급받고자 피고인 장○○에게 '스키와 스케이트를 별도로 하여 해외전지훈련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지

시하였고, 피고인 장○○는 이○○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최○○에게 전달하였다.

김○○은 2016. 1. 5.경 제일기획 대표이사인 임○○와 스포츠사업총괄사장인 김○○을 만나 '영재센터는 BH 관심사다, 잘 도와주라'고 요구하였고, 김○○은 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삼성그룹이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나 본인의 체육 관련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마음먹었다.

최○○은 2016. 1.~2.경 피고인 장○○에게 '삼성그룹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준다고 한다, 이○○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장○○는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이○○에게 '삼성그룹 쪽 사람들을 만나 후원금을 더 요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은 2015. 2. 22.경 제일기획 스포츠전략기획본부장인 이△△을 만나 영재센터를 후원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은 이를 김○○에게 보고하였다.

이△△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김○○은, 삼성전자에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후원을 요청하였고, 삼성전자는 2016. 3. 3.경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10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다.

###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장○○는 김○○, 최○○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 등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16억 2,8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나.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영재센터 후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GKL'이라고 한다)는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최○○은 2016. 1.경 김○에게 'GKL이 영재센터를 후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은 그 무렵 GKL 대표이사인 이□□에게 연락하여 'GKL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이□□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GKL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마음먹고, GKL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인 이◇◇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최○○은 피고인 장○○에게 이□□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이□□에게 연락하여 GKL이 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장시호는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이○○에게 이□□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2억원 정도를 후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GKL 이□□ 사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16. 1. 20.경 이□□를 통해 이◇◇를 소개받은 이○○은 그 무렵 GKL 사회공헌재단 실무자들을 만나 몇차례 후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결국 GKL 사회공헌재단은 2016. 4. 8.경 5,000만원, 2016. 6. 8.경 1억 5,000만원을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장○○는 김○, 최○○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 등 GKL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장○○는 2015. 9. 4.경 영재센터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빙상) 영재캠프' 사업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적립금 4,000만원을 영재센터에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사업적립금 사업비 지원 검토 요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장○○는 총 사업예산 7,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영재센터 법인자금으로 자부담(自負擔)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문체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위 요청서와 함께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자부담금 중 일부를 차명으로 운영중인 누림기획에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누림기획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자부담금 액수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문체부 담당 공무원은 2015. 9. 24.경 영재센터에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장○○는 이를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누림기획과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유용하고자 계획하였음도 불구하고, 마치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사업비를 정상 집행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전회(前回) 사업비가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정상 집행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차회(次回)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716,834,000원을 문체부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장○○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문체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신청일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재원)	비고
2015.09.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빙상) 영재캠프	2015.09.24.	40,000,000원 (공익사업적립금)	자부담 광고·홍보비 명목 5,720,000원 횡령
2015.12.18.	제1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스키캠프 스키영재 선발대회 등	2015.12.24.	199,700,0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자부담 온라인광고대행비 등 명목 35,100,000원 횡령
2016.07.06.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2016.07.13.	477,134,0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b>합 계</b>			716,834,000원	

### 3. 업무상횡령

피고인 장○○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성 전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등 법인자금을 영재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6.경 누림기획이 영재센터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572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영재센터 법인자금 합계 301,821,000원을 누림기획 내지 더스포츠엠에 지급한 다음, 이를 누림기획 내지 더스포츠엠의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지급 명목	거래처	금액	비고
1	2015.11.06.	미디어 광고·홍보	누림기획	5,720,000원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으로 기입
2	2015.11.16.	미디어 홍보·광고	누림기획	5,000,500원	
3	2015.11.30.	온오프라인 홍보비	누림기획	5,500,500원	
4	2015.12.19.	온라인 광고대행	누림기획	3,300,000원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으로 기입
5	2016.01.11.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누림기획	3,300,000원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으로 기입
6	2016.01.18.	온오프라인 캠프 홍보	누림기획	5,500,000원	
7	2016.02.18.	빙상행사 진행	누림기획	28,500,000원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으로 기입
8	2016.03.07.	스키전자훈련	누림기획	25,000,000원	
9	2016.03.30.	컨설팅계약금	더스포츠엠	110,000,000원	
10	2016.05.05.	컨설팅계약잔금	더스포츠엠	110,000,000원	
<b>합 계</b>				301,821,000원	

이로써 피고인 장○○는 영재센터의 법인자금 301,821,000원을 업  
무상 횡령하였다.▣▣▣

## II. 최○○ 추가인지

- 최○○을 위 1.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로 추가인지 하였고,  
이 부분은 김○과 같은 날 추가 기소할 예정